

1. 개정이유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서 조류충돌 예방 활동을 과격하고 부정적인 의미인 퇴치로 표현하고 있어, 조류가 항공 안전을 위해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립적인 의미의 용어로 변경 추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퇴치’ 용어를 ‘충돌예방’으로 변경(안 제5~6조, 제8조, 제11조, 제17~18조, 제27조, 제30~3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퇴치”를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퇴치 장비”를 “장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야생동물 퇴치”를 “야생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퇴치방법 개발, 조류퇴치”를 “충돌예방 방법 개발, 조류 충돌예방”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퇴치활동”을 “예방활동”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조류퇴치 전담인원)”을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조류퇴치”를 “조류 충돌예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류퇴치활동”을 “조류 충돌예방 활동”으로, “조류퇴치 전담인원”을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류퇴치활동”을 “조류 충돌예방 활동”으로, “조류퇴치에”를 “조류 충돌예방 활동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조류퇴치”를 각각 “조류 충돌예방”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퇴치”를 “충돌예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퇴치활동분야”를 “충돌예방 활동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조류퇴치”를 “조류 충돌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류퇴치기법”을 “조류 충돌예방기법”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퇴치는”을 “충돌예방 활동은”으로, “하여야하며”를 “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류퇴치용”을 “조류 충돌예방용”으로 한다.

제31조 중 “조류퇴치용”을 “조류 충돌예방용”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류퇴치용”을 “조류 충돌예방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본문 중 “조류퇴치”를 “조류 충돌예방”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류퇴치용”을 “조류 충돌예방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활동)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활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 하는 주요 자문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조류충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u>퇴치</u> 에 관한 문제	3. ----- ----- <u>예방</u>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항과 공항주변에서의 조류 충돌 예방 방법과 <u>퇴치장비</u> 기술개발 현황	5. ----- ----- <u>장비</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 회 운영) ① (생 략)	제6조(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 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 위원회는 지방항공청, 공항운영 자, 관할 행정기관, 항공사(국적 사와 외항사), 공군부대, 야생동 물학회의 야생동물담당자, 조류 및 <u>야생동물 퇴치</u> 전문가 등으 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 ----- ----- ----- ----- ----- ----- <u>야생동물</u> ----- -----.
③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 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③ ----- -----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조류와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퇴치방법 개발, 조류퇴치 전담
인력의 배치 상황(주간 및 야
간)

3. ~ 6. (생 략)

④ (생 략)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와 별
표2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
립, 분석, 퇴치활동 감독, 이해
관계자와 의견조정, 위험평가
업무수행 책임자의 지정

2. ~ 11. (생 략)

③ · ④ (생 략)

제11조(조류퇴치 전담인원) ① 공
항운영자는 제2조제13호에 따
른 공항 운영시간, 운영하는 활
주로의 수에 따라 적정한 조류
퇴치 전담 인원을 확보하여 운
영하되, 그 인원의 수는 최소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

1. (현행과 같음)

2. -----
충돌예방 방법 개발, 조류 충
돌예방 -----
--

3.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예방활동 -----

2. ~ 11.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

① -----

----- 조류
충돌예방 -----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 이 · 착륙이 불가능한 복수활주로 및 교차활주로는 매 두개의 활주로 중 하나를 0.5개로 보아 적용한다.

② 민군공용공항 중 군에서 주도적으로 조류퇴치활동을 시행하는 공항의 조류퇴치 전담인원은 군 인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야간 등 군이 조류퇴치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조류퇴치에 문제가 없도록 제①항 기준에 따른 인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항공기 운항횟수가 1만회 미만인 민간공항은 조류퇴치 전담인원으로 4명을, 5천회 미만인 민간공항은 2명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 · 김포 · 김해 · 제주 공항의 경우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항운영시간에 사용활주로 마다 최소 4명의 조류퇴치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 -----

--.

② -----
----- 조류 충돌예방 활동-----
----- 조류 충돌예방 전담인원-----
-- . ----- 조류 충돌예방 활동-----
-- 조류 충돌예방 활동에 -----

----- .

③ -----

----- 조류 충돌예방-----

-- .

④ -----

----- 조류 충돌예방 -----
----- .

제17조(조류충돌 감소조치) ① ~

③ (생 략)

④ 각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
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조
류충돌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
전과 등 정기적인 홍보를 하여
야 하며, 조류와 야생동물 퇴치
활동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직
무교육도 실시하여 조류충돌의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8조(교육훈련) ① 공항운영자
는 해당 공항에서의 조류충돌
예방활동 전담직원이 직무를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
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생 략)

2. 정기교육훈련 : 퇴치활동분야
의 기술 향상과 신기술의 도
입, 생태환경 등의 변화로 필
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시키
기 위한 3년마다 실시하는 20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제17조(조류충돌 감소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충돌
예방 -----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교육훈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충돌예방 활동
분야-----

② -----

과 정기교육훈련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퇴치 업무 관련 법규와
규정
2. ~ 4. (생략)
5. 장·단기적 조류퇴치기법

6. ~ 9. (생략)

제27조(외부임대 농경지의 운영)
공항운영자는 공항주변의 땅을
소유하여 유지경비 절감과 운영
경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농경지
나 방목지로 임대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2. (생략)
3. 초식동물(고라니 등)의 퇴치
는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하며,
야생동물이 공항 내로 들어오
지 않도록 적절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조명탄의 사용) 조류퇴치
용 조명탄을 사용할 때에는 다
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 5. (생략)

제31조(총기류의 관리) 조류퇴치

-----.

1. 조류 충돌예방 -----
--
2. ~ 4. (현행과 같음)
5. ----- 조류 충돌예방기
법

6. ~ 9. (현행과 같음)

제27조(외부임대 농경지의 운영)

-----.

- 1.·2. (현행과 같음)
3. ----- 충돌
예방 활동은 -- 하여야 하며-

-----.

제30조(조명탄의 사용) 조류 충돌
예방용 -----

-----.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총기류의 관리) 조류 충돌

용 총기류는 규칙적으로 청소하
여야 하며, 총기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습기와 녹이 슬지 않
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야 한다.

제32조(총기류의 안전관리) 조류
퇴치용 총기류의 안전취급을 위
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총기를 수령한 조류퇴치 전
담인원은 상시 총기를 소지하
여야 한다. 다만, 실내 출입 등
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총기
를 임시로 거치해야 할 경우
에는 개별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잠금 후 보관
하여야 한다.

제33조(폭음기의 안전관리) 조류
퇴치용 폭음기의 안전취급을 위
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예방용 -----

-----.

제32조(총기류의 안전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

-----.

1. ~ 7. (현행과 같음)
8. ----- 조류 충돌예방

-----.

-----.

제33조(폭음기의 안전관리) 조류
충돌예방용 -----

-----.

1. · 2. (현행과 같음)